



나는 가장이다

대출내용

- **대출금액**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,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(단,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)
- **대출금리**: 무이자 ● **대출용도**: 임차보증금
- **대출조건**: 2024년 1월 1일 ~ 2024년 7월 31일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 상향이 되어야함

<예시> 1)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750만원 - 500만원 = 2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250만원)

2)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800만원 - 200만원 = 600만원 (⇒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/본인 부담금액 100만원)

3) 임대주택: 보증금 5,000만원(본인부담금 250만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원(본인부담금 400만원)으로 상향된 경우
: 400만원 - 250만원 = 1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150만원)

● 상환방법 및 금액

▶ 30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5만원 분할 상환
*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 상환

신청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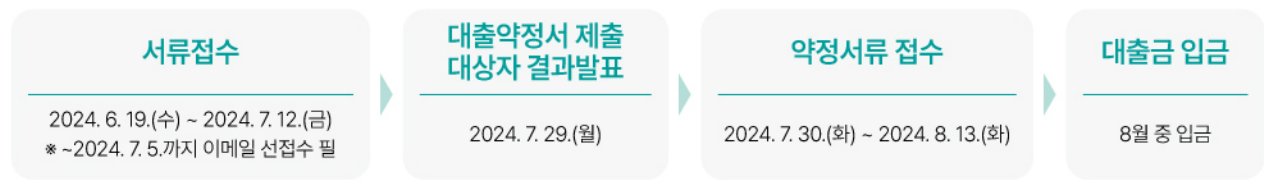
-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- 1) 만 18세 (취학 시 만 22세)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- 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(*수도권 : 서울, 경기, 인천)
 - 수도권 1억2천만원 이하
 - 광역시 9,000만원 이하
 - 그 밖의 지역 8,000만원 이하
 - 월세 거주(계약) 시 월세 60만원 이하

<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>
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2인	3,683,000	130,901	74,359	132,127
3인	4,715,000	167,876	123,611	169,859
4인	5,730,000	205,281	156,318	208,153

* 가구원수 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만 18세 이하 : 2006.1.1. 이후 출생자 (취학자녀 : 2002.1.1. 이후 출생자)
*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
사업일정



*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,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사항

●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지원팀 T. 02-861-3011

* 문의가 많아 유선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seoulhanbumo.or.kr

대출 불가 세대

●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
- 1)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- 2)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(민법상 대출 불가)
- 3)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4) 1년 미만의 단기계약
- 5)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6) 공인중개인 없이 개인 간 계약을 진행한 경우
- 7) 신용관리 대상자 (개인회생, 파산 등)



- * 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-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 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 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

● 접수방법 :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 (개인 신청 불가)

● 제출서류 *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구분	구비서류		작성요령	
필수서류	신청기관	· 서식1. 신청기관 신청서	-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(서식1~2) 다운로드 -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	
		· 서식2.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 동의서	-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	
	신청자	·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*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 등을 통해 가리고 제출 요망	
		· 현재 거주지 임대계약서 사본 - 신청 전 신규(재계약)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(사본)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(사본)		
		·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	-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- 시설거주자는 '시설입소 확인서' 제출	
		소득증빙서류 (해당분야 제출)	1.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(50%이하) ·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2.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63%이하 ·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. 기준 중위소득 63%초과~100%이하 ·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·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- (해당)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
해당자	신청자	심사평가사 가점부여	· 청소년 한부모 · 다자녀(3명 이상)양육 한부모 · 장애인증명서	- 등본(신청자 연령 및 동거 자녀) 확인 - 가구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구 1-3등급)인 경우에 한함
		신용회복 대상자	·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,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	-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
	만 18세~22세 이하 취학자녀	· 재학증명서 (휴학 시 휴학증명서 제출)		

● 유의사항
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폐기/신청인 요청시에는 반환 가능
-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(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)

“(재)서민주택금융재단과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함께 동행합니다.”